# 2025학년도 특수교육 치료·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 및 1학기 세부운영 계획(안)

담당부서 : 특수교육부

# 1

# 특수교육 치료·방과후지원 운영 기저

#### 1. 근거

- 가.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(특수교육 관련서비스)
- 나.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〈교육부 고시 제2022-33호〉
  - Ⅱ.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
  - 1. 설계의 워칙
  - 가.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·운영하며,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.
  - 5)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와 시·도교육청 후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·지원할 수 있다.
- 다. 2025 경기 특수교육 정책 추진 기본계획

### 2. 배경

- 가. 장애개선 및 2차 장애예방을 위한 치료지원 보장 요구
- 나. 학교 교육 기능 보완을 위한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
- 다.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·운영 필요
- 라.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서비스 요구 증대

#### 3. 목적

- 가.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
- 나.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기계발 및 사회적응력 향상
- 다. 다양한 학습 욕구 해소 및 보육과 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
- 라. 장애로 인한 교육 격차의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

#### 4. 프로그램 운영 계획

실천내용	목표	시기	대상
기초수요조사 및 분석	2회	7월, 12월	특수교육대상학생, 학부모
연간 운영계획 수립	1회	3월	담당 교사
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및 계약	2회	2~3월, 7~8월	강사
세부 운영계획 수립	2회	학기별	담당 교사
강사 오리엔테이션 실시	2회	학기별	강사
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	2회	학기별	강사
활동 결과 통지	2회	학기별	수강생
수업 공개	1회	5월	학부모
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	2회	학기별	수강생, 학부모, 교사
자체 점검ㆍ평가	2회	학기별	담당 교사, 교감

- ※ 2학기 특수교육 교내방과후 프로그램 변경 시, 수업 공개를 1회 추가하여 운영함.
- ※ 학사일정 등에 따라 운영이 변경될 수 있음.

#### 5. 1학기 치료・방과후지원 유형

유형	내용	지원방법	대상
	1-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필요로 하는 치료지원 을 센터 소속 치료사가 지원	순회 또는 내방	특수교육대상학생 신청자 중 <b>선정된 자</b>
1학기 치료 ·	2-꿈이든카드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프로그램(치료지원, 특기적성 등)을 학교 밖 꿈이든카드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유수강권	الماحا	특수교육대상학생 신청자 전원 (특수교육지원센터 최료사 치료지원 특수교육 종일반, 유치원 방과후, 초등 돌봄, 늘본학교, 교육비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농산어혼 방과후학교, Wee센터 심리치료비 지원 이용 학생 제외)
방과후 지원	3-교내방과후 정규 수업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	1인당 월 15만원 이내 지원	
	4-자유수강권 학부모환급금 꿈이든카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병(의) 원을 이용하여 방과후교육비를 학부모 통장 으로 교부해야 하는 경우		

#### 교내방과후 운영계획

#### 1. 방침

- 가. (목적)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잠재적 능력 계발로 학생의 소질 계발, 특기 신장 및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적응력 신장
- 나. (운영지원)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치료 방과후지원 운영지원단 조직 관리
- 다. (운영) 단위학교는 교내방과후 운영을 학교의 여건과 학생, 보호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 우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운영
- 라. (대상) 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(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제외)
- 마. (제외 대상)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치료지원, 특수교육 종일반, 유치원 방과후,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학생
- 바. (운영시간) 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운영하며, 학생과 보호자의 수요에 따라 학기 또는 방학 중 유통성 있게 운영
- 사. (수요조사) 학생과 보호자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 실시
- 아. (프로그램) 학생과 보호자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기·적성, 사회적응 프로그램, 직업 교육, 돌봄을 위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·운영
- 자. (강사) 외부강사, 현직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능력과 자질이 있는 자를 선정 ※ 단위학교는 정규 수업 운영과 개인의 건강권·휴식권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(외부강사 모집이 어려운 경우 등)에만 소속 교사를 교내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할 수 있음
- 차. (예산)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,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예산 편성·집행 결과 공개(당해연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름)

  ※ 시간당 강사비는 내부강사 4만원 이내, 외부강사 4만5천원 이내로 지급하며, 운영비는

※ 시간당 상사비는 내무상사 4만원 이내, 외무상사 4만3선원 이내도 시급하며, 운영비는 교내방과후 전체 예산의 10%이내에서 편성하되,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0% 까지 편성함 수 있음.

- 카. (약전) 교내방과후 유영계획 수립 시 생활· 안전지도·방역 등 학생 관리 계획을 포함
- **타. (유의)** 교내방과후는 학기 단위(1학기: 3월-8월, 2학기: 9월~다음연도 2월)로 운영. 중도 취소 시 남은 기가 꿈이든카드로 변경 사용 불가하다는 것을 사전에 보호자에게 안내 필수
- 파. (평가) 만족도 조사, 프로그램 공개, 지도결과 가정 통지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· 환류 체제 확립
- **하.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시** 방과후학교를 중지, 연기하거나, 다양한 방법(실시간 쌍방향, 온오프라인 연계 등)으로 운영할 수 있음
- 거. 치료·방과후지원(교내방과후, 꿈이든카드)의 미사용 금액은 다음달로 자동 이월 ※ 단. 학년도 기준으로 2026년 2월까지만 이월 가능
- **너. (정보 공개)** 초, 중, 고, 특수학교는 정보공시(학교알리미)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우영·지원 현황을 연 1회 공개한다.
- ※ 참고사항: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'2025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(경기도교육청)'에 준하여 운영

#### 2. 1학기 특수교육 교내방과후 세부 내용

가. 대상: 특수교육대상학생 총 16명 중 6명

순	학번	이름	비고
1	0000	박00	
2	0000	유00	
3	0000	000	※ 교내방과후와 꿈이든카드 함께 이용   - 치료·방과후 지원 유형 중 교내방과후와 꿈이든카드는
4	0000	임00	- 시묘·정좌우 시천 규정 중 교대정좌우와 꿈이근가르는 상호 병행하여 월 15만원 이내에서 사용 가능
5	0000	임00	
6	0000	∘]00	

- **나. 교육 기가**: 2025. 03. 31. ~ 06. 30.(※ 2025. 06. 24. ~ 06. 30 : 방과후 보강주가)
- 다. 지워급: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5만원 이내(※ 전액 경기도교육청 지원)

#### 라. 강의 시간

- 1) 월요일: 15:05~16:35 (45분씩 2차시-90분)
- 2) 목요일: 16:00~16:45 (45분씩 1차시-45분)
- ※ 교육 기간과 강의 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#### 마. 개설 프로그램 내용

프로그램명	주요내용	담당교사
특수 체육1	<ul> <li>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근력, 유연성, 균형 감각 등 기본적인 운동능력을 향상하고, 공 던지기, 받기, 달리기, 점프 등 기본적인 운동 기술을 숙달하여 응용 스포츠 활동에 활용</li> <li>팀 스포츠 및 협동 활동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 증진 및 규칙 준수, 협력, 배려 등 사회적 기술 함양</li> </ul>	서00
특수 체육2	<ul> <li>신체활동을 통해 자립 의지 강화 및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 습득, 건강 유지·신장</li> <li>체육 및 도전적 활동을 통한 성취감 경험 및 자립심 고취</li> </ul>	박00

#### 3. 1학기 특수교육 교내방과후 강사 채용

#### 가. 강사 채용 계획

- 1) 2025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(경기도교육청) 강사선정계획 및 절차에 따라 채용
- 2)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운영계획 및 강사선정계획 심의
- 3) 학교별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외부강사를 평가할 수 있으며 90점(100점 기준) 이상일 경우 2년차까지 연장 가능함(단, 3년차에는 채용 절차 필수)
- 4) 특수학급 강사 재계약 평가기준(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재계약 평가를 통해 선정)

영역	급간 및 배점						
3 =	상	상 중					
80%이상 출결	100~70	69~40	39~				
학생 비율(10)	10점	9점	8점				
교사	100~85	84~70	69~				
만족도(20)	20점	19점	18점				
학생	100~85	84~70	69~				
만족도(20)	20점	19점	18점				
학부모	100~85	84~70	69~				
만족도(20)	20점	19점	18점				
성실도(30)	결석, 지참이 없는 경우	결석, 지참이 1~2회	결석, 지참이 3회 이상				
78 世 王(30)	30	25	20				

#### 나. 강사 채용 기준

- 1) 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(예정)자
- 2)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ㆍ기능 보유자
- 3)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(군인, 귀농인, 기업인 등)
- 4) 기타 교내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5) 당해 학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교원(기간제 교사 포함)

## 다. 강사 선정 절차

학교운영위원회	학교의 장		학교의 장		학교의 장		학교의	장
운영계획 및 강사 선정계획 심의	강사모집공고 5일 이상 (등록일 제외)	↔	강사 신청자 심사	↔	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,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	$\Diamond$	프로그램 위탁계약	강사 체결

#### 라. 채용 강사 정보 및 강사료

프로그램명	성명	자격	차시당 강사료
특수 체육1	서00	• 특수학교(중등)정교사(2급) 교원자격증	
즉구 세휵1   서00		• 내부강사(당해 학교 재직 중인 교원)	40.000위
巨人 訓 0 0	HLOO	• 특수학교(중등)정교사(2급) 교원자격증	40,000 12
특수 체육2 	박00	• 내부강사(당해 학교 재직 중인 교원)	

- 1) 외부강사 강사료는 월 단위로 지급한다.
- 2) 내부강사 강사료는 학기 단위로 프로그램 종료 후 지급한다.

# 4. 1학기 교내방과후 특수체육 프로그램 안내

	프로그램명	담당교사				
	특수 체육1	서00				
	강의소개					
	학생들의 균형 감각, 유연성, 근력, 순발력, 민첩성 등 다양한 신체 능력을 향상한다. 단순히 운동기능 향상뿐만 아니라, 팀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고, 학생 주도형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성을 함양한다.					
	강의:	계획표				
횟수		교육내용				
1-2	오리엔테이션 및 신체활동 준비 운동 (스트	트레칭, 가벼운 달리기)				
3	균형 감각 훈련 (외나무다리 건너기, 짐볼	활동)				
4-5	근력 강화 운동 (탄력밴드 운동, 공 던지기/	받기)				
6	유연성 중진 운동 (요가, 스트레칭)					
7-8	신체 적응 게임 (신체 부위 맞추기, 릴레이	게임)				
9	탁구 기본자세 및 라켓 잡는 법					
10-11	탁구공 주고받기 및 기본 스트로크 연습					
12	슐런 게임 규칙 이해 및 기본자세 연습					
13-14	슐런 게임 실전 및 전략 익히기					
15	뉴스포츠 체험 (플로어볼, 티볼 등)					
16	팀 스포츠 활동 및 사회성 증진					
17-18	축구 기본 기술 (드리블, 패스) 연습					
19	미니 축구 경기 및 규칙 이해					
20-21	농구 기본 기술 (드리블, 패스, 슛) 연습					
22	미니 농구 경기 및 규칙 이해					
23-24	팀 협력 게임 (협동 공 옮기기, 단체 줄넘기)					
25	배드민턴 기본 기술 및 게임					
26-27	핸드볼 기본 기술 및 게임					
28-29	프리테니스 또는 패드민턴 체험					
30	순발력 및 민첩성 훈련 (사다리 운동, 콘 거	임)				
31-32	응용 게임 (피구형 게임, 발야구형 게임)					
33	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한 종합 스포츠	활동				
34-35	학생 주도형 스포츠 활동 (학생들이 원하는	활동 선택)				

※ 교육내용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프로그램명	담당교사				
특수 체육2	박00				
강의소개					
하고,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, 신체활동을 통해 운동능력을 향상한다.					
-1 Al-	ा की पर				

,,	아고, 정취심을 경임될 수 있도록 아버, 신세월당을 중에 문항당의를 왕정된다. <b>강의계획표</b>					
횟수	교육내용					
1-2	오리엔테이션, 체조를 통해 근육 이완하기					
3	나의 몸 알아보기					
4-5	템포 트레이닝 1 (다양한 방법과 속도로 걷기)					
6	장애물 피해 걷고 달리기					
7-8	템포 트레이닝 2 (다양한 방법과 속도로 뛰기)					
9	다양한 선을 따라 걷고 달리기					
10-11	협동 이어달리기 게임하기					
12	슐런 게임 규칙 및 기본 자세 연습하기					
13-14	슐런 게임 진행하기					
15	농구에 대해 배워보아요 1 (패스와 드리블 연습하기)					
16	농구에 대해 배워보아요 2 (목표한 숫자만큼 슛 해보기)					
17-18	풍선 배드민턴 게임하기					
19	빅민턴으로 게임하기					
20-21	집볼 운동하기1 (집볼드리블, 집볼패스 운동하기)					
22	짐볼 운동하기2 (짐볼볼링 운동하기)					
23-24	플라잉 디스크 목표물 맞추기					
25	플라잉 디스크 게임하기					
26-27	눈 손 협응 운동하기 1 (접시콘 할리갈리)					
28-29	눈 손 협응 운동하기 2 (접시콘 판 뒤집기)					
30	눈 손 협응 운동하기 3 (스포츠 스태킹)					
31-32	e스포츠 경기 참여하기 1					
33	e스포츠 경기 참여하기 2					
34-35	미니 체육대회(한 학기 동안 수업했던 여러 가지 종목을 종합하여 미니 체육대회 진행하기)					

<sup>※</sup> 교육내용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#### 5. 1학기 특수교육 교내방과후 교육비 운영

#### 가. 예산 운영 세부 내용

프로그램	산출근거	항목	소요 예산
	6명×6개월×150,000원	강사비	35차시×40,000원×2명 = 2,800,000원
특수	= 5,400,000원	운영비	296,000원
체육1,2		표 8 비	(지원 예산의 10% 이내)
711,2	총 35차시	계	총 3,096,000원

- ※ 예산 확보 방안: 전액 경기도교육청 지원
- ※ 지원비: 1인당 월 15만원이내
- ※ 강사비: 내부강사 기준 차시당 40,000원
- ※ 특수학급 프로그램은 학생 1명당 월 86,000원 소요되므로 차액은 꿈이든카드 사용하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함.

#### 나. 예산 운영 방향

- 1) 지원금은 수강료 및 운영비로 사용한다.
- 2) 운영비는 지원예산의 10%이내에서 사용한다.

#### 6. 평가 계획

- 가. 1년에 1회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공개수업 실시
- 나. 학기별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평가 결과 가정 발송
- 나. 학기별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(학생, 학부모, 교사)
- 다. 학기별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자체 점검 · 평가표 작성

#### 7. 안전관리계획

- 가. 학생의 인수인계는 수업 시작 5분 전 학생 담당 특수교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사이에 이루어진다.
- 나. (생활지도) 프로그램 참여 시 교사에 대한 예의 및 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수시 지도한다.
- 1)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.
- 2) 학생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 유지, 청소 시 임장 지도한다.
- 다. (안전지도)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.
- 1) 교내 안전 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.
- 2) 방과후학교 강사는 문제 발생 시 바로 학생 담당 특수교사에게 연락하고 특수교사는 2025학년도 복합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응급의료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한다.

특수 방과후 담당 교사	특수교육부 부장교사	특수학급 담임교사	특수학급 부담임교사
박00	최00	박00, 서00, 조00	정00, 이00

- 3) 직사광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, 폭염 특보, 미세먼지·오존 경보 발령, 태풍·집중호우, 혹한, 폭설 등 기타 교육감(학교장)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.
- 4)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 시,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, 학부모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.

# III i

#### 꿈이든카드

#### 1. 방침[※2025 꿈이든카드 길잡이에 따름]

- 가. (목적)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방과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질 계발 및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
- 나. (지원대상) 영아·유·초·중·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(전공과 제외)
- 다. (운영시간) 정규 교육과정 이외 시간에 학교, 지역 여건, 수요자 요구를 고려하여 학기 중, 방학 중 사용
- 라. (프로그램) 치료지원, 특기·적성교육, 사회적응 프로그램, 진로·직업교육 등
- 마. (이용기관) 「꿈이든카드」서비스지원기관으로 등록된 지역사회 내 병·의원, 복지관, 비영리 기관, 공공기관, 보건복지부 재활바우처 수행기관, 예체능 및 직업기술 학원
- 바. (지워금액) 월 15만원 이내에서 교내방과후와 함께 사용 가능
- 사. (지원원칙) 실제 수업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, 「꿈이든카드」교육비는 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일괄 교부
- 아. (유의) 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에게 치료·방과후지원을 안내하고 꿈이든카드 사이트에 치료지원, 교내(유치원)방과후, 특수교육종일반, 미신청을 포함하여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의 치료·방과후지원 현황 입력

#### 2. 1학기 꿈이든카드 세부 내용

가. 대상: 특수교육대상학생 총 16명 중 16명

#### 나, 지위 기간

1) 1학기: 2025년 3월~8월

2) 2학기: 2025년 9월~2026년 2월

- 다. 지원금: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5만원 이내(\* 전액 경기도교육청 지원)
- 1) 포인트로 구현되며, 미사용 금액은 2026년 2월까지만 이월 가능
- 2) 1인당 월 15만원 이내에서 교내방과후와 함께 사용 가능
- 3) 월 15만원 초과분은 보호자가 부담

#### 라. 내용

순	학번	이름	교육기관명	교육내용	비고
1	0000	김00	하00000	0000	
2	0000	문00	하00000	0000	
3	0000	00[∘	밝00000	0000	
4	0000	황00	밝00000	0000	
5	0000	남000	참00000	0000	
6	0000	박00	기관미선정	-	교내방과후 이용
7	0000	임00	밝00000	0000	
8	0000	홍00	밝00000	0000	
9	0000	유00	유00000	0000	교내방과후 이용
10	0000	김00	장00000	0000	
11	0000	00[≎	경00000	0000	교내방과후 이용
12	0000	임00	배 00000	0000	교내방과후 이용
13	0000	임00	그00000터	0000	교내방과후 이용
14	0000	00[≎	기관미선정	-	교내방과후 이용
15	0000	정00	장00000 0000		
16	0000	한0	밝00000	0000	

#### 3. 1학기 꿈이든카드 교육비 운영

#### 가. 예산 운영 세부 내용

1) 꿈이든카드만 이용하는 학생

프로그램	산출근거	항목	소요 예산	
꿈이든카드	10명×6개월×150,000원	계	10명×6개월×150,000원 = 9,000,000원	

2) 꿈이든카드와 교내방과후를 함께 이용하는 학생

	프로그램	산출근거	항목	소요 예산
	꿈이든카드 (교내방과후 이용)	6명×6개월×150,000원		(CH V CH ) (CH V CH ) 2 000 000 01
		3,096,000원 (교내방과후 예산)	계	(6명×6개월×150,000원)-3,096,000원 = 2,304,000원

※ 교내방과후를 함께 이용하는 학생은 1명당 월 64,000원의 꿈이든카드를 사용함. (학부모에게 안내)

#### 나. 예산 지원 계획

- 1) 지원 대상: 영아 · 유 · 초 · 중 ·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
- 2) 제외 대상
  - 가) 전공과 학생,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치료지원 학생
  - 나) 특수교육 종일반, 공·사립 유치원 방과후과정 참여 학생
  - 다)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학생(교육청 지원)
- 3) 지원 예산: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매월 15만원 이내(※ 전액 경기도교육청 지원)
  - 가) 꿈이든카드 교육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며, 서비스지원기관으로 일괄 교부
  - 나) 포인트로 구현되며, 미사용 금액은 2026년 2월까지만 이월 가능
  - 다) 1인당 월 15만원 이내에서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수강 가능, 15만원 초과분은 보호자가 부담
- 4) 유의사항
  - 가) 꿈이든카드 수강료 지원은 치료ㆍ방과후 지원 신청서가 작성된 달부터 지원
  - 나) 꿈이든카드 미신청한 경우 미신청기간 동안 소급 불가
    - (단, 3월에 치료·방과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였으나 대상자 등록이 5월에 늦게 입력된 경우는 3~4월 포인트 이월 신청 가능)
  - 다) 꿈이든카드 수강료 결제는 서비스지원계획서를 등록하여 교육청의 승인된 날부터 결제 되며 승인 이전의 수강료는 소급 불가
  - 라) 교내방과후 신청 안내 시 대상자가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미참여 동의서(사유 및 서명 자필 작성) 구비